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3.13)

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5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현행)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월 8만원), 전몰군경의 유족(월 5만원)
 - (변경) 명예수당 : 월 8만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보훈대상자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개정이유

-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민의 날을 변경함(안 제2조)
 - (현행)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변경)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변경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으로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를 변경함(안 제9조제5항)
 - (현행) 1년
 - ⇒(변경)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
- 나. 용어를 순화함
 - 제반 ⇒ 모든, 자 ⇒ 사람, 인 ⇒ 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향우회 :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

나.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출향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 - 군정시책 홍보
 -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

- “향우회”란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으로 규정.

○ 안 제3조(출향인의 지위)

- 출향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4조(지원내용)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군정시책 홍보
 -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안 제5조(포상)

-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인 ⇒ 명
 -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5조 제3항 신설
 -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인” ⇒ “명”, “기타” ⇒ “그 밖의”,
 - “규정에 의거” ⇒ “~ 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